

자동차 보험의 유형별 보상 사례

김희중

(한국자동차보험(주) 지점장)

1. 자동차 보험의 품질과 가격

자동차 보험에 가입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혜택은 자동차의 사용 과정에서의 잘못으로 부담하게 되는 타인에 대한 손해 배상금액을 보험회사로부터 보상받은 것이다. 특히, 사람이 부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 부담하게 되는 손해 배상금은 해가 거듭할수록 그 금액이 점점 고액화되고 있어 자동차보험 제도를 활용하지 않고는 금전적으로는 물론이고, 본인 스스로 사고 처리를 해 본 사람은 사고의 원만한 수습에 소요되는 시간과 노력이 엄청나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자동차보험 제도도 해가 거듭할수록 그 내용이 점점 복잡해 지고 있어, 보험 가입시는 물론, 가입후에도 유의해야 할 사항들이 있다. 통상 보험 가입은 보험료를 내고 보험 영수증과 보험 증권만을 받아두면 당연히 보험 처리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보험 가입이 잘못되어 보험 처리를 받을 수 없는 경우가 종종 있다. 특히, 보험 가입시에 보험료를 줄일 목적으로 보험 가입자의 명이나

자동차 운전자를 사실과 다르게 기재함으로써 사고 발생후에 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최근 자주 일어나고 있다.

상품을 구입하는 사람은 그 상품이 자기가 원하는 품질인지를 먼저 확인하고, 다음으로 값을 흥정해서 좋은 품질의 상품을싼 값에 사고자 한다. 넓게 보아서 보험도 보험료라는 가격을 지불하고 불의의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금전적으로 보험 혜택을 받게되는 일종의 무형의 상품이기 때문에, 보험료가 싸다는 면에 치중하여 보험가입을 잘못하게 되면 실제로 사고 발생시에는 그 보험 상품은 가입자에게 아무런 혜택도 주지 못하는 쓸모가 없는 상품을 산 결과가 되어 버리고 만다.

2. 자동차 보험은 누구의 이름으로 가입하여야 하는가?

위에서 말한 바와 같이, 자동차 보험에 가입하는 중요한 목적은 사고가 발생한 경우 부담하게 되는 다른 사람에 대한 손해 배상금을 보상받기 위한 것이므로, 자동차 사고 발생시 타인에게 '손해 배상 책임을 부담하게 될 사람'을 보험 가입자(보험 용어로는 "피보험자"라고 한다)로 지정하여야

한다. 자동차 사고 발생시 손해 배상 책임을 질 사람이 누구인지는 현행 우리나라의 법규정상 일률적으로 말할 수는 없지만, 통상은 그 자동차의 실제의 소유자와 그 소유자가 운전을 허락한 운전 자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어떤 사정 때문에 자동차의 사용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타인의 이름으로 자동차를 구입하였다 하더라도, 자동차 보험은 본인의 이름으로 가입하여야 한다. 자동차 보험의 보험료가 가입자의 성별, 연령, 보험 가입 년수, 면허 취득 시기 등에 따라서 차이가 나기 때문에 자동차의 형식적인 소유자 이름으로 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보험료가 싼 경우에는 자칫 잘못 생각하면 형식적인 소유자 이름으로 가입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경우는 그 보험 자체가 무효가 될 수도 있고, 사고 발생시 보험 처리를 받을 수 없게 될 수도 있다. 자동차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중고차를 구입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보험 가입자를 자기 이름으로 변경시켜야 하며, 종래 소유자 이름을 그대로 보험 가입자로 남겨 두는 것이 보험료가 싸다고 해서 가입자를 변경하지 않으면,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3. 보험 가입시 어떠한 조건으로, 어떠한 보험료를 내고 가입하여야 하는가?

보험은 보험금이 지급되는 사고의 발생 가능성에 따라 보험료가 달라진다. 화재 보험은 화재 발생의 가능성, 사망이나 상해 보험은 사망률이나 상해 발생의 가능성에 따라 보험료가 달라지는 것과 마찬가지로 자동차 보험에서는 자동차 사고의 발생 가능성에 따라 보험료가 달라진다. 자동차 사고의 발생 가능성은 운행 횟수, 사용 용도, 운전자의 운전 형태, 운전 경력, 결혼 여부는 물론이고, 운전자의 연령이나 성별에 따라 차이가 난다.

보험은 사고의 발생 여부나 지급될 보험금의 규모가 우연한 사정에 의하여 좌우되며, 더우기 사고 발생 가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사실은 보험 회사보다 보험 가입자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가입자는 보험 가입시에 사고 발생 가능성에 관련되는 사실 즉, 보험료의 차이가 발생하는 사실에 관하여 이를 숨기거나 사실과 다르게 알려서는 안되며,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보상을 받을 수 없게 된다. 구체적으로는 보험 가입시에 보험회사측에서 이러한 사실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질문하며, 가입자는 그 질문에 대하여 수동적으로 답변하면 된다. 보험료를 싸게 하기 위하여 개인 사업상 물건의 배달에 사용하는 자동차를 출퇴근에 사용하는 것으로 자동차의 사용 용도를 사실과 다르게 답변하여 그 당시에는 형식적으로는 보험 가입이 되었다 하더라도,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자동차의 사용 용도가 확인되게 되며, 그렇게 되면 이미

사고가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보상을 받을 수 없게 된다.

(사례 1)

매매 계약에 의하여 중고 자동차를 산 사람이, 아직 자동차 등록원부상의 소유자 명의를 변경하지 못하여 여전히 판 사람 명의로 되어 있어서, 자동차 종합 보험을 갱신하면서 전 소유자는 그 동안의 보험 가입 경력이 있기 때문에 보험료가 싸다는 것을 알고, 자기 이름으로 보험을 가입하지 않고 판 사람 이름으로 보험을 가입한 후, 운행하다가 인사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 경우에는 보험 처리를 받을 수 있는가?

매매 계약에 의하여 자동차를 팔고 자동차를 인도한 후에는 자동차를 판 사람은 그 자동차와는 전혀 관련이 없는 사람이며, 자동차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손해 배상 책임을 질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자동차를 판 사람 이름으로 가입한 자동차 보험은 보험 자체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으며, 보험 처리를 받을 수 없다.

(사례 2)

자가용 승용차를 자동차 종합 보험에 가입하면서, 사고 발생시 아무런 불이익없이 보험 처리를 받기 위하여, 보험 가입자가 보험 회사에 정확히 알려 할 사항은 주로 어떤 사항인가?

보험 가입시에 작성하게 되는 계약 청약서 용지의 일부에 중요 사항에 관한 질문 사항이 기재되어 있기 때문에, 보험 가입자는 그 질문표에 기재되어 있는 사항을 수동적으로 알려 주는 것으로 충분하다. 그러한 사항 중에서 주요한 것을 예시하면 첫째, 출퇴근 등 개인의 통상적인 가정 생활에 사용하는지 아니면 개인 사업자의 사업상의 업무에 사용하는지 여부

둘째, 그 자동차를 주로 운전하는 사람의 성별·연령·결혼 여부 셋째, 가족운전 한정 특약(소위 오너 보험)의 경우에 그 자동차를 운전하게 될 저년령자(26세 미만)에 관한 사항 등이다.

(사례 3)

지물포 및 도배업을 하는 사람이 승용차를 자동차 종합 보험에 가입하면서 사업상 배달 업무에 사용하면서도 출퇴근 등 가정 생활에 사용하는 것으로 보험 회사에 알리고, 실제로는 종업원(미혼, 26)이 주로 운전하는데도 다른 사람(기혼, 46세)을 주운전자로 알려 보험 가입을 한 후, 경부고속도로상에서 중앙선 침범 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험 처리가 가능한지?

이 경우는 보험 가입 차량이 실제로 개인 사업용에 사용되며, 주운전자가 연령이 적은 미혼자임에도 불구하고 주운전자를 기혼자로, 사용 용도를 출퇴근 등 가정용으로 알려, 보험료의 차이가 생기므로 사고가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보험 처리를 받을 수 없다.

(사례 4)

보험 가입시에는 출퇴근용으로 사용하던 승용차를 보험 가입후에 사정이 바뀌어 개인 사업용으로 사용하게 된단든지, 운전자를 고용하게 되어 주운전자가 가입시보다 나이가 적은 사람 또는 미혼자로 바뀌어 될 사정이 생긴 경우에는 어떻게 하여야 하는가?

이 경우에는 보험 회사나 보험 회사의 대리점 등에 사정이 변경된 사실을 알려 보험 가입 내용을 변경하고 보험료 차액이 생기는 경우에는 추가로 보험료를 부담하면 된다. 만일, 보험 가입 내용을 변경하지 않고 그대로 운행하다가 사고가 발생하면 보험 처리를 받을 수 없게 된다. ☹